

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관리번호		
연 모 법 인	①사업자등록번호		②법인등록번호			
	③법인명		④전화번호			
	⑤대표자 성명		⑥전자우편주소			
	⑦소재지					
해 사 업 장	⑧명칭		⑨연락처			
	⑩소재지					
⑪연결사업연도 . . . ~ . . .		⑫법인종류별 구분	중소 기업	일반기업		⑬조정구분 []외부 []자기
			중견 기업	상호출 자제한 기업	그외 기업	
			30	73	83	93
⑭신 고 구 분		1. 정기신고, 2. 수정신고(가.서면분석, 나.기타) 3. 기한후 신고 4. 경정청구				
⑮법인세신고일		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			⑰사업연도의제 []여 [] 부	

구 분	법인지방소득세			
	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합 계
⑩연 결 수 입 금 액	()			
⑪(연 결) 과 세 표 준				
⑫연 결 산 출 세 액				
⑬총 부 담 세 액				
⑭기 납 부 세 액				
⑮차 감 납 부 할 세 액				
⑯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				
⑰납 부 할 총 세 액(⑬+⑭)				
⑱분 납 할 세 액		⑲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(⑰-⑱)		

28 안분홍

[illegible]

②⑨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

[illegible]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7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 (연결모법인 본점신고서)	1.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.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(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, (포괄)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, 현금흐름표 등 포함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·군·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.

작성 방법

- ①사업자등록번호 ~ ⑦소재지, ⑩연결사업연도 ~ ⑫법인세신고일, ⑬사업연도의제 및 ⑭연결수입금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.
 - 해당사업장란: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, 연락처, 소재지를 ⑧명칭, ⑨연락처,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.
※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.
 - ⑬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: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.
 - ⑮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⑭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⑮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⑯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 - ⑮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⑮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⑯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⑰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 - ⑯충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⑱가감계란의 금액에서 ⑲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⑲가감계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⑳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 - ㉑기납부세액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㉒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㉓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 - ㉔차감납부할세액란: ㉑충부담세액에서 ㉒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 - ㉕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란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.
 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(수정 신고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)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
 - ㉖분납할 세액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㉗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㉘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.
 - 종업원 수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 - 건축물 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·저유조·저장창고·저장조·송수관·송수관 및 송전철탐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 - 안분율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(0 이상 1 이하)을 적습니다.

$$\left[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 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right] \div 2$$
-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㉙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
 - 법인명: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 - 관계: 모법인은 "모", 자법인은 "자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: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.
 -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(표준):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(표준)의 총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산출세액: "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"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: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가산세액: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: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기납부세액.
 - 특별징수납부세액: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.
 - 「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> 연결집단 전체의 충부담세액 합계」인 경우
 -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·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충부담세액
 -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-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
 - 「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≤ 연결집단 전체의 충부담세액 합계」인 경우
 -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·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× $\frac{\text{해당 납세지의 충부담세액}}{\text{연결집단 전체의 충부담세액}}$
 -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-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
 - 1) 및 2)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.
 -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수시부과세액: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: ㉕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㉘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$$\text{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} = \text{과세표준} \times \text{표준세율} \times \text{안분율} \times \left(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}}{\text{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}} - 1 \right)$$
 -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: "납세지별 산출세액 -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 + 납세지별 가산세액 +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-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±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 ±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"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: ㉖분납할 세액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: "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-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"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㉚금융기관명 ~ ㉜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